

EU 특정 플라스틱 지침*의 주요내용과 비교법적 시사점

*Directive (EU) 2019/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

오원정**

**부경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(수료), (재)숲과나눔 제7기 특정주제연구자

개요

1. 지침의 개요

- **(제정 배경)** 1회용 플라스틱 제품, 재사용 가능한 제품에 비해 해양에 유입될 가능성 높음
 - 실제로 유럽 해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1회용 플라스틱 품목 10가지, 어구와 함께 EU 해양폐기물 총량의 **70%**를 차지
- **(제정 목적)** 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·감축
 ②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·제품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

2. 지침의 규율대상

- ① 유럽 해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**1회용 플라스틱 제품 10가지**
- ②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
- ③ 플라스틱 함유 어구

유럽 해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 10가지	① 면봉 스틱, ② 식기류·접시·빨대·교반기, ③ 풍선·풍선 막대기, ④ 식품 용기, ⑤ 음료용 컵, ⑥ 음료 용기, ⑦ 담배꽂초, ⑧ 비닐 봉투, ⑨ 포장재·랩, ⑩ 물티슈·위생용품
	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
	플라스틱 함유 어구

3. 규율내용별 규율대상 1회용 플라스틱 제품

- 각 규율내용이 적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종류를 구분하여 부속서에 명시

규율 내용	규율 대상 1회용 플라스틱 제품
소비 감축	① 음료용 컵(덮개 및 뚜껑 포함) ② 식품 용기(덮개 여부 불문)
시장 출시 제한	① 면봉, ② 식기류(포크, 칼, 숟가락, 젓가락), ③ 접시, ④ 빨대, ⑤ 음료 교반기, ⑥ 풍선에 부착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스틱, ⑦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식품 용기(덮개 여부 불문), ⑧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음료 용기(캡 및 뚜껑 포함), ⑨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음료용 컵(덮개 및 뚜껑 포함)
제품 요건	① 3리터 미만의 음료 용기(캡·뚜껑·혼합 음료 포장재 포함) - (제외)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과 뚜껑이 있는 유리 또는 금속 음료 용기, 특수 의료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음료 용기



EU 특정 플라스틱 지침의 주요내용

1. 소비 감축

- '22년 대비 '26년까지 소비량에서 측정가능한 양적 감축 달성 필요
- 회원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 - 국가 소비 감축 목표의 설정
 -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등

2. 시장 출시 제한

- 특정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

3. 제품 요건

- **(비분리형 뚜껑 설계)** 음료 용기 사용 시 플라스틱 캡과 뚜껑이 용기 본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,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장 출시를 허용



- **(재생원료 비율)** 음료 용기의 주요 성분이 PET라면 재생원료 비율을 충족해야 함

구분	음료 용기	재생원료 비율
'25년~	회원국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'PET병' 기준	평균 25% 이상
'30년~	회원국 시장에 판매되는 '모든 음료 용기' 기준	평균 30% 이상

EU 특정 플라스틱 지침의 비교법적 시사점

1. 사전예방적 관점 및 순환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관리

- 사후적 관리 < **사전예방적 관리**와 순환이용에 초점
- (시장 출시) EU의 **규제 강도** 높음, 포장재 규정안상 규제대상까지 포함하면 **규제대상도** 많음
→ 규제 강도 상향 조정, 규제대상 확대·검토 필요
- (제품 요건) EU는 **구체적인 설계 요건 의무, 재생원료 비율 목표**까지 제시
- 우리나라,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재질 규제, 이외에는 친환경적 재질을 사용한 경우 표시하는 등 수익적 규율, 사업자의 자율에 기대야 하는 한계 있음

구분	EU	우리나라
시장 출시 제한	[시장 출시 금지] ① 면봉, ② 식기류(포크, 칼, 숟가락, 젓가락), ③ 접시, ④ 빨대, ⑤ 음료 교반기, ⑥ 풍선에 부착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스틱, ⑦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식품 용기(덮개 여부 불문), ⑧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음료 용기(캡 및 뚜껑 포함), ⑨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음료용 컵(덮개 및 뚜껑 포함)	[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] ① 컵·접시·용기, 수저·포크·ナイ프, ② 합성수지 재질 도포·접합된 광고선전물, ③ 면도기·칫솔·치약·샴푸·린스, ④ 봉투·쇼핑백, ⑤ 응원용품, ⑥ 비닐 식탁보, ⑦ 빨대·젓는 막대, ⑧ 우산 비닐
제품 요건	[구체적인 설계 요건 제시] 비분리형 뚜껑 설계 [재생원료 비율 목표 제시] ① PET병 ② 모든 음료 용기	[특정 재질 사용 제한] ① PVC 포장재, ② 먹는 생물/음료류 유색 PET병, ③ PET병에 사용되는 열알칼리성 접착제 [친환경적 재질 표시] ①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, ② 생분해성수지제품 환경표지 인증

2. 폐기물의 최종 처리지로서 '해양'에 주목하는 접근

- 해양에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접근에서 출발, 이런 접근이 법제화까지 이어지는 당위성을 획득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
- 우리나라, 육상 발생원 폐기물의 경우 해양 유입 시 위해성은 도외시하는 경향 있음
- 우리 폐기물 관리법제가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구분하여 규율하기 때문
- 폐기물의 최종 처리지로서 '해양'에 주목, 해양에 미치는 위해성 관리하겠다는 접근 필요
→ 해양에 자주 유입되는 1회용 플라스틱을 **누락 없이 규제대상에 포함 가능**
→ 1회용 플라스틱이 **해양에 유입되는 경우 재활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설계 요건** 규율 가능